

## 주요 노동동향

### 경제일반

◆ 2008년 5월 생산 증가세 둔화, 소비투자 감소세 지속

○ 2008년 5월 생산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등으로 광공업, 서비스업 각각 전년동월대비 8.3%, 4.6%로 나타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섬유제품 등에서 생산이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1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4%), 부동산 및 임대업(6.0%), 운수업(5.9%)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대표적인 내수관련 산업인 도·소매업(2.0%), 숙박 및 음식점업(1.7%), 통신업(2.4%)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짐.

－ 소비재 판매는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8.1%)와 식료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증가한 반면, 의복·직물,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4%)에서 감소를 보임.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로 전월보다 0.2%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5%p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 2008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전년동월대비 5.5% 상승)

- 2008년 6월 물가상승은 국제유가가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국내석유제품 가격상승과 함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함.
  - 20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국제곡물가격·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에 따라 2007년 상반기 대비 4.3%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5월	3/4	4/4	연간p	1/4p	4월p	5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7.0	10.5	6.0	11.0	6.8	10.5	10.4	8.3(-0.6)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7.1	5.8	6.1	11.2	7.0	10.6	11.0	8.7(-0.6)
	출 하	9.7	9.0	9.2	3.8	7.8	5.1	7.2	6.6	5.5	10.6	7.1	8.8	8.3	6.1(-1.2)
	수 출	13.1	14.2	15.7	5.6	11.9	6.7	9.9	7.8	9.4	16.2	10.5	14.5	14.1	15.8( 2.2)
	내 수	7.1	4.9	3.8	2.2	4.5	4.1	4.9	6.0	2.7	6.8	4.8	5.2	4.6	-0.1(-2.5)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4	5.6	7.2	6.8	6.4	6.3	6.0	4.6( 1.0)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5.2	5.2	7.1	4.5	5.3	3.9	5.7	3.1(-0.6)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2.1	8.8	0.7	9.2	8.6	-0.9	-1.9	-2.5(-2.3)
물가		2.0	2.3	2.5	2.2	2.2	2.1	2.4	2.5	2.3	3.3	2.5	3.8	4.9	5.5( 0.6)

주 : p는 잠정치임. (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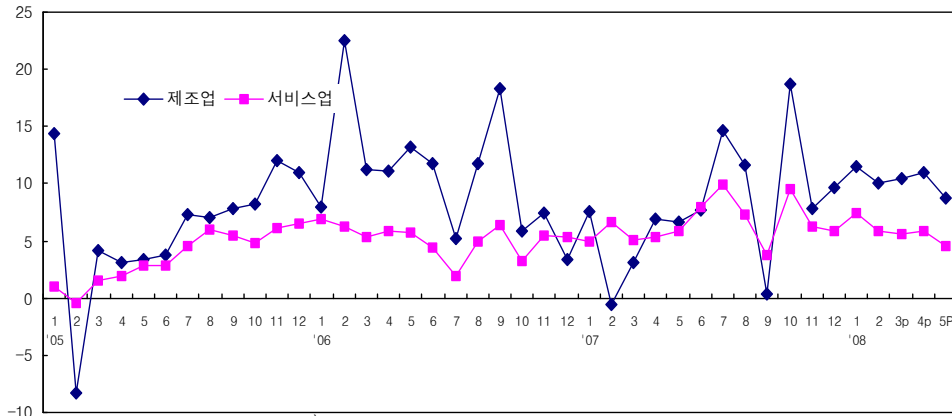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3) 2008년 물가는 5월, 6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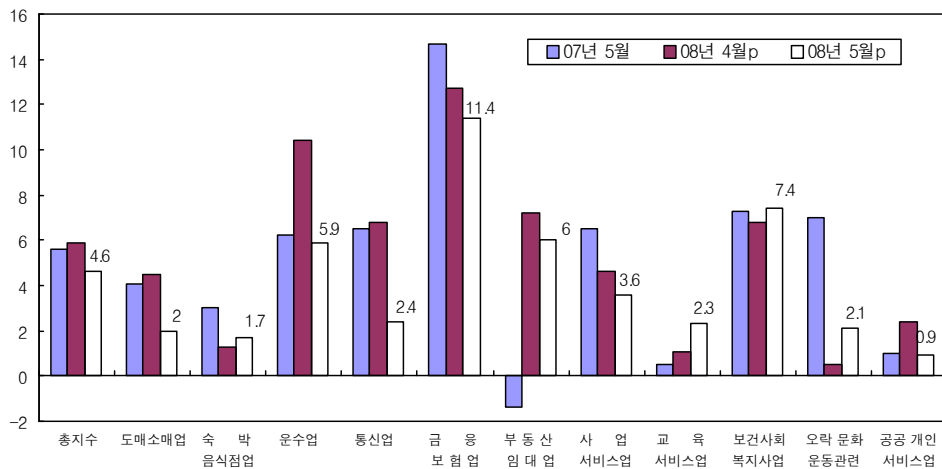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8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0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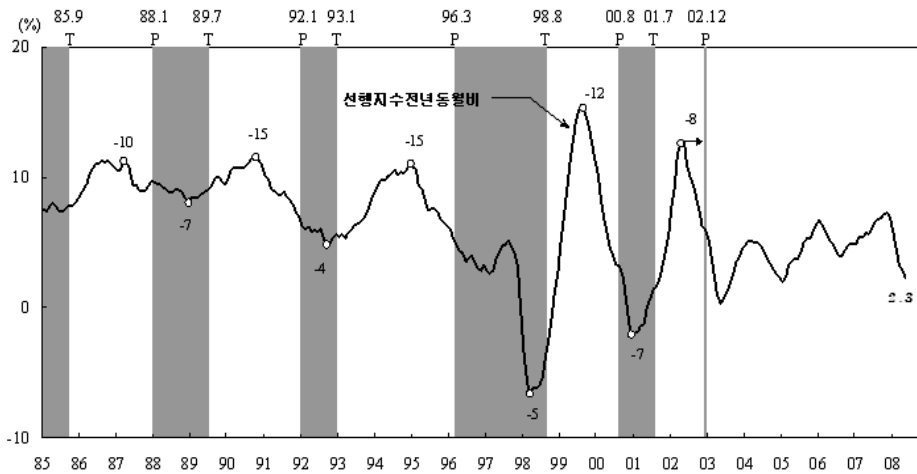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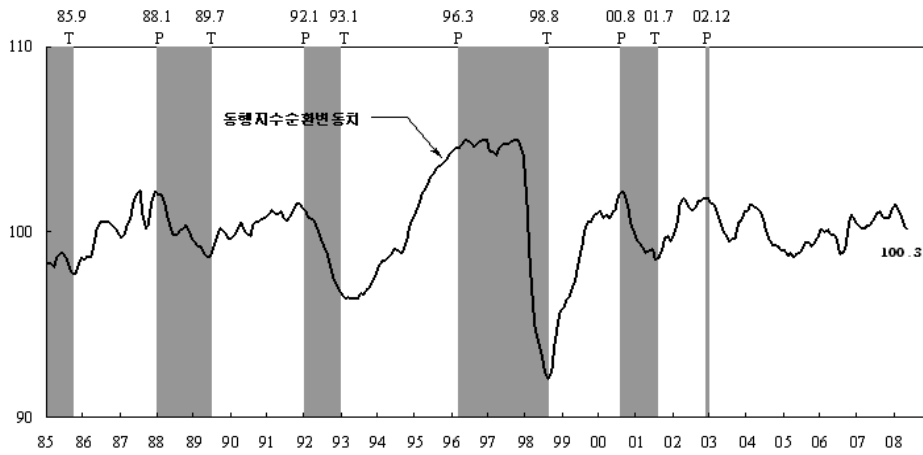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08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08. 6.

고용 동향

◆ 경찰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8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6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천 명(0.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345천 명으로 94천 명(0.7%)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347천 명으로 61천 명(0.6%) 증가함.
- 2008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4.4%)이 전년동월대비 0.4%p, 여성(51.1%)이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그림 4 참조).
- 2008년 5월 중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2008년 5월 중 취업자는 23,9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1천 명(0.8%)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0천 명(0.9%), 여성 취업자는 10,0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 명(0.5%)이 증가함.
- 2008년 5월 중 실업자는 7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3.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4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 명(-6.8%)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2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3.9%)이 증가함.
  - 실업률은 남성이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4%를 보였고, 여성은 전년동월과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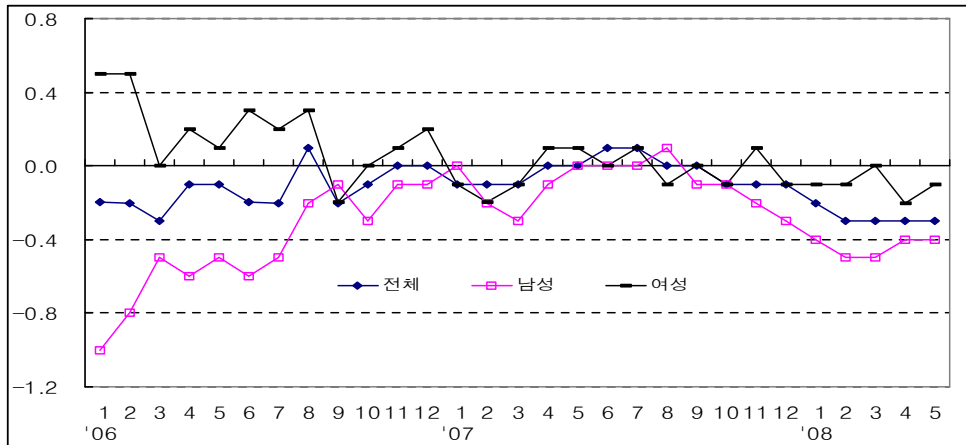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3,692 ( 0.9)	24,489 ( 1.1)	24,537 ( 1.1)	24,367 ( 1.1)	24,316 ( 1.0)	23,852 ( 0.7)	24,495 ( 0.7)	24,692 ( 0.6)
참가율	60.8	62.6	62.7	62.1	61.8	60.5	62.0	62.4
취업자	22,841 ( 1.2)	23,698 ( 1.2)	23,758 ( 1.2)	23,610 ( 1.3)	23,582 ( 1.2)	23,051 ( 0.9)	23,711 ( 0.8)	23,939 ( 0.8)
고용률	58.6	60.6	60.7	60.2	60.0	58.5	60.0	60.5
실업자	851	791	779	756	734	801	784	753
실업률	3.6	3.2	3.2	3.1	3.0	3.4	3.2	3.0
비경제활동인구	15,305 ( 1.4)	14,647 ( 1.0)	14,600 ( 0.9)	14,865 ( 1.0)	15,000 ( 1.3)	15,575 ( 1.8)	15,006 ( 1.7)	14,848 ( 1.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2008년 5월 고용동향』, 2008. 6.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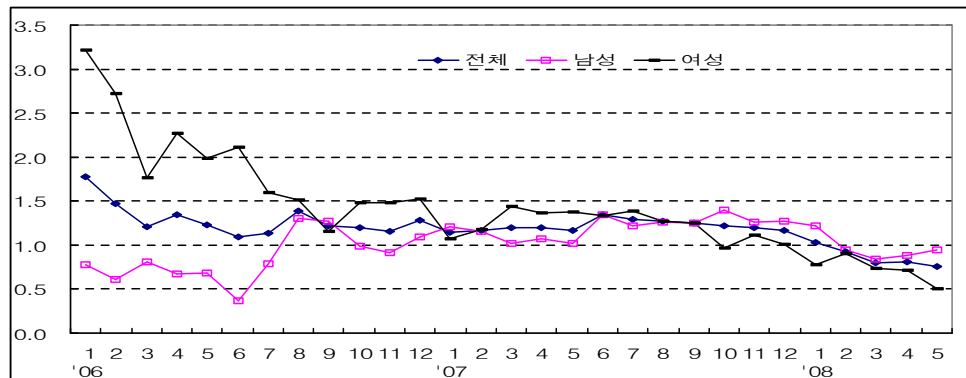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동일한 3.2%를 기록함.

- 2008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8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8천 명(1.7%)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4,94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3천 명(2.8%)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90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천 명(1.2%)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1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 감소함.
  - ※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172천 명(2007. 5) → 1,376천 명(2007. 8) → 1,404천 명(2007. 12) → 1,192천 명(2008. 4) → 1,167천 명(2008. 5)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

○ 2008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9천 명, 4.1%), 전기·운수·통신·금융업(18천 명, 0.8%)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8천 명, -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2천 명, -0.7%), 건설업(-32천 명, -1.7%), 제조업(-17천 명, -0.4%)에서는 감소함.

– 2007년 7월 이후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감소

○ 2008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5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9천 명(-1.7%)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4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0천 명(1.9%)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478천 명, 5.6%)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94천 명,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산업	22,841 ( 1.2)	23,409 ( 1.2)	23,758 ( 1.2)	23,610 ( 1.3)	23,582 ( 1.2)	23,051 ( 0.9)	23,711 ( 0.8)	23,939 ( 0.8)
농림어업	1,450 (-2.8)	1,952 (-2.7)	1,950 (-2.6)	1,866 (-3.7)	1,690 (-3.8)	1,388 (-4.3)	1,763 (-2.4)	1,893 (-3.0)
제조업	4,138 (-1.2)	4,181 (-1.3)	4,114 (-1.3)	4,093 (-1.2)	4,120 (-0.9)	4,114 (-0.6)	4,099 (-0.6)	4,097 (-0.4)
건설업	1,772 ( 2.7)	1,904 ( 1.6)	1,935 ( 1.1)	1,843 (-0.3)	1,853 (-0.5)	1,754 (-1.0)	1,910 (-1.1)	1,903 (-1.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76 (-1.0)	5,725 (-1.0)	5,722 (-0.2)	5,723 (-0.3)	5,707 (-0.6)	5,660 (-0.8)	5,683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 4.3)	7,256 ( 4.8)	7,615 ( 4.7)	7,674 ( 5.2)	7,762 ( 5.0)	7,684 ( 4.4)	7,845 ( 4.2)	7,924 ( 4.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 2.8)	2,323 ( 3.3)	2,403 ( 3.4)	2,396 ( 2.5)	2,415 ( 1.8)	2,385 ( 0.9)	2,414 ( 0.5)	2,421 ( 0.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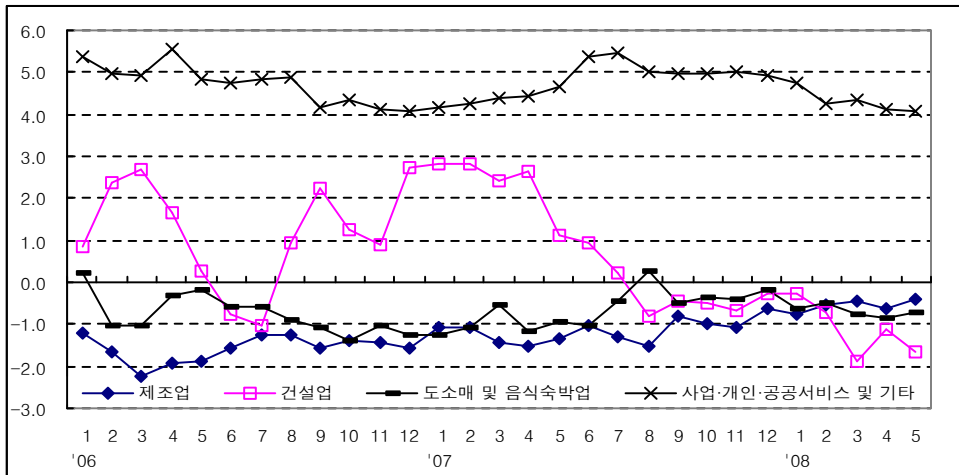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8년 5월 고용동향』, 2008. 6.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1.8%) 일용근로자(-73천 명, -3.2%)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반면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 2008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0천 명(55.5%)이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711천 명으로 1,251천 명(-6.0%)이 감소함.

—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급증은 조사대상기간(5.11~5.17) 중에 법정공휴일(5.12,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기인함.

◆ 40대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

○ 2008년 5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감소함.

— 2008년 5월 중 연령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19세(-1천 명), 20대(-11천 명), 30대(-4천 명), 50대(-14천 명) 60세 이상(-4천 명)에서 감소한 반면, 40대(7천 명)에서 소폭 증가

— 2008년 5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19세(5.7%, -0.5%p), 20대(6.9, -0.1%p), 50대(1.9%, -0.4%p), 60세 이상(1.2%, -0.1%p)에서 감소하였고, 40대(2.0%, 0.1%p)에서 증가한 반면, 30대(3.2%, 0.0%p)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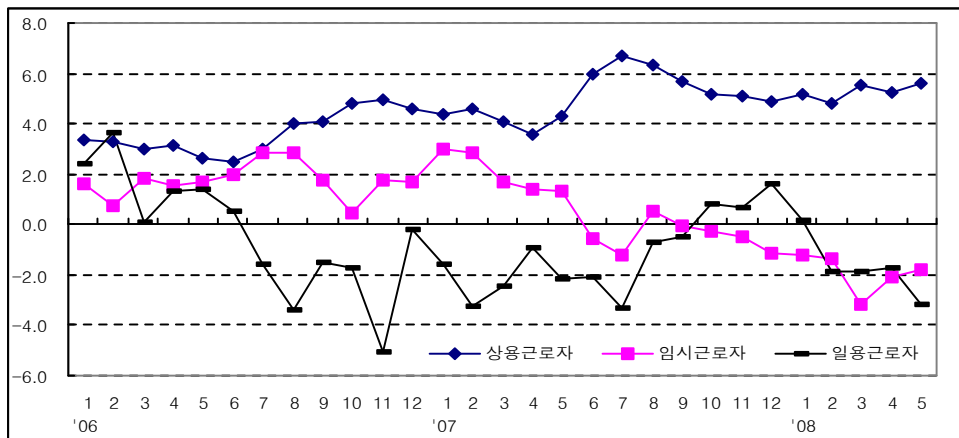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체	22,841 ( 1.2)	23,698 ( 1.2)	23,758 ( 1.2)	23,610 ( 1.3)	23,582 ( 1.2)	23,051 ( 0.9)	23,711 ( 0.8)	23,939 ( 0.8)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663 (-1.2)	7,589 (-2.2)	7,426 (-1.8)	7,097 (-1.4)	7,453 (-1.4)	7,534 (-1.7)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149 (-0.7)	6,128 (-1.3)	6,035 (-1.4)	5,816 (-1.3)	6,034 (-0.7)	6,092 (-0.9)
무급가족 종사자	1,304 (-3.2)	1,498 (-1.8)	1,514 (-2.9)	1,460 (-5.9)	1,391 (-3.4)	1,281 (-1.8)	1,419 (-4.1)	1,442 (-4.8)
임금근로자	15,642 ( 2.8)	16,061 ( 2.4)	16,095 ( 2.3)	16,022 ( 3.0)	16,156 ( 2.6)	15,954 ( 2.0)	16,258 ( 1.8)	16,405 ( 1.9)
상용근로자	8,404 ( 4.3)	8,533 ( 4.6)	8,532 ( 4.3)	8,753 ( 6.2)	8,790 ( 5.1)	8,839 ( 5.2)	8,894 ( 5.2)	9,010 ( 5.6)
임시근로자	5,163 ( 2.5)	5,237 ( 0.7)	5,259 ( 1.3)	5,133 (-0.3)	5,156 (-0.6)	5,064 (-1.9)	5,127 (-2.1)	5,165 (-1.8)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304 (-2.1)	2,135 (-1.5)	2,211 ( 1.0)	2,051 (-1.2)	2,238 (-1.7)	2,231 (-3.2)
36시간 미만	3,014 ( 6.4)	2,564 ( 1.7)	2,561 ( 3.6)	3,962 (23.7)	2,549 (-5.1)	2,770 (-8.1)	2,504 (-3.9)	3,981 (55.5)
36시간 이상	19,384 ( 0.2)	20,906 ( 1.1)	20,962 ( 0.8)	19,227 (-2.4)	20,806 ( 2.2)	19,888 ( 2.6)	20,964 ( 1.4)	19,711 (-6.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8년 5월 고용동향』, 2008. 6.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체	851(3.6)	791(3.2)	779(3.2)	756(3.1)	734(3.0)	801(3.4)	784(3.2)	753(3.0)
15~29세	346(7.6)	330(7.3)	318(7.0)	322(7.1)	312(7.0)	328(7.3)	330(7.5)	307(6.9)
30~39세	216(3.5)	203(3.3)	202(3.2)	189(3.0)	183(2.9)	193(3.1)	191(3.0)	197(3.2)
40~49세	151(2.3)	130(1.9)	126(1.9)	132(2.0)	126(1.9)	160(2.4)	151(2.2)	133(2.0)
50~59세	96(2.4)	95(2.2)	96(2.3)	80(1.9)	78(1.8)	83(2.0)	82(1.9)	83(1.9)
60세 이상	42(1.7)	33(1.2)	38(1.3)	34(1.2)	35(1.3)	38(1.6)	32(1.2)	34(1.2)
중졸 이하	150(2.8)	112(1.9)	118(2.0)	105(1.9)	109(2.0)	128(2.5)	127(2.3)	109(1.9)
고 졸	426(4.2)	379(3.7)	370(3.6)	378(3.7)	372(3.7)	402(4.0)	352(3.5)	364(3.6)
대졸 이상	274(3.3)	300(3.5)	292(3.5)	274(3.2)	253(2.9)	271(3.1)	305(3.4)	280(3.1)
취업무경험실업자	40	40	38	44	40	44	48	43
취업유경험실업자	810	751	741	712	694	757	736	711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5월 고용동향』, 2008. 6.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9천 명), 고졸(-6천 명), 대졸 이상(-11천 명)에서 모두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1.9%, -0.1%p), 대졸 이상(-3.1%, -0.4%p)에서 감소한 반면, 고졸(3.6%, 0.0%p)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 2008년 5월 중 전체 실업자 753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 명 증가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11천 명으로 30천 명 감소했음.

임금 동향

- ◆ 2008년 1/4분기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6.1% 상승
- 2008년 1/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62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1% 상승

- 상용근로자는 임금총액 증가율 5.7%, 정액급여 증가율 5.4%, 초과급여 증가율 8.2%, 특별급여 증가율 5.8%를 기록
- 임시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한 88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전산업에서는 5~9인, 제조업에서는 30~99인의 임금상승률 가장 높아
  - 2008년 1/4분기 전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8.1%, 10~29인 5.9%, 30~99인 7.9%, 100~299인 6.4%, 300인 이상 5.6%를 나타냄.
  - 제조업에서는 30~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이 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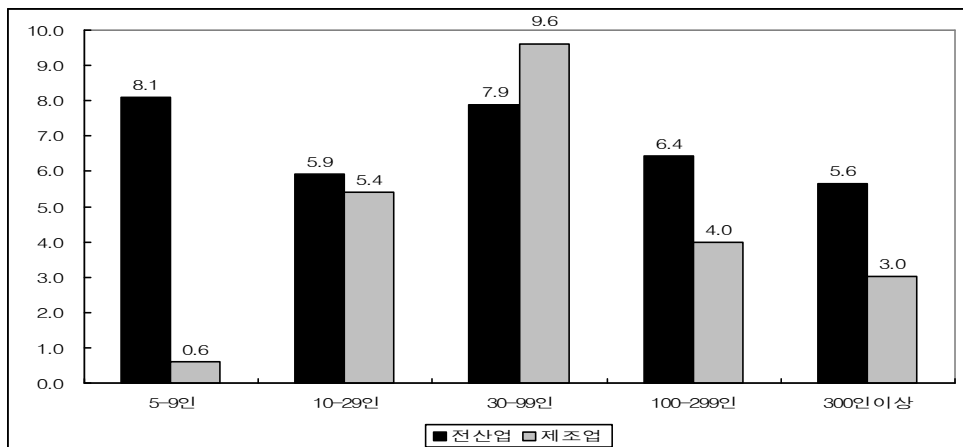
(단위: 천원/월,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10 (-)	2,410 (-)	2,604 (-)	2,719 (-)	2,662 (6.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661 (-)	2,555 (-)	2,761 (-)	2,888 (-)	2,811 (5.7)
	정액급여	1,995 (-)	1,995 (-)	2,028 (-)	2,086 (-)	2,103 (5.4)
	초과급여	156 (-)	167 (-)	165 (-)	172 (-)	168 (8.2)
	특별급여	510 (-)	394 (-)	568 (-)	630 (-)	540 (5.8)
임시근로자 임금총액	870 (-)	911 (-)	918 (-)	918 (-)	887 (1.9)	
실질임금(전체 근로자)	2,425 (-)	2,304 (-)	2,472 (-)	2,565 (-)	2,478 (2.2)	
소비자물가지수	103.5 (2.1)	104.6 (2.4)	105.3 (2.3)	106.0 (3.3)	107.4 (3.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8〕 규모별 임금상승률(2008년 1/4분기)

(단위: %)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노사관계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

- 2008년 6월 25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함.
  - 분규발생건수는 32건으로 전년동기(30건)에 비해 감소한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243,816일로 전년동기(65,989일)대비 269.5% 증가함.

◆ 노동부, 「청소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 개정에 의한 입법예고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나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동법의 시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직업체험 기획확대, 정부의 직업진로지도 강화,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그간 입법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법의 범명이 청년실업 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인하는 기능이 미흡한 바, 청년고용의 적극 유인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하고 학력, 경력, 기술수준 등의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함.

◆ 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고시 및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각종 고시 및 예규도 이에 맞춰 전면개정함.

〈표 7〉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일)

	2007. 6. 25	2008. 6. 25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개소)	32	30
근 로 손 실 일 수 ( 일 )	65,989	243,816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표 8〉 「고시」 개정내용 및 사유

	고시명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li> <li>○법률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1조, 시행령 제40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호: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li> <li>○법률조항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0조, 시행령 제60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의 근거를 구체화</li> <li>○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및 띠어쓰기 등 변경</li> </ul>
2	실업인정 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하, 허사, 사옥, 지지면 일원도서, 수도, 녹도, 추양도 등을 도서지역에 포함</li> <li>○법률조항: 법 제34조 제3항 및 영 제45조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하, 허사, 사옥, 지지면 일원도서, 수도, 녹도, 추양도 등은 도서지역에서 제외</li> <li>○법률조항: 법 제44조 제2항 및 영 제65조 제8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육교 건설 등으로 육지화된 곳 제외</li> <li>○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및 일부 문안 변경</li> </ul>
3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조항: 법 제42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조항: 법 제52조 제1항 및 영 제73조 제1항 제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변경</li> </ul>
4	광역구직활동비용 숙박료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여비규정의 국가공무원 제4호 등급 숙박료</li> <li>○법률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2조, 규칙 제62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적용, 상한액 40,000원</li> <li>○법률조항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6조, 규칙 제111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2” 변경사항 적용</li> <li>○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등을 변경</li> </ul>
5	이주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여비규정 “국내 이전비 지급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신 50% 감액, 5인 이상 가족 30% 증액</li> </ul> </li> <li>○법률조항: 법 제53조, 규칙 제6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여비규정 “이전비 지급기준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신 50% 감액, 5인 이상 가족 30% 증액</li> </ul> </li> <li>○법률조항: 법 제67조 제2항, 규칙 제11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5” 변경사항 적용</li> <li>○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등을 변경</li> </ul>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자발적 실업자이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li> <li>○자발적 실업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시로 규정하였던 사항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중대한 귀책사유), 제2항(불가피한 사유)</li> </ul> </li> </ul>
7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 지정고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일수의 1/3~2/3를 지급 - 우대업종은 10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일부와 건설업,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업종이나 육성이 필요한 업종(코드)을 지정</li> </ul> </li> <li>○법률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62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코드)에 맞춰 변경</li> <li>○법률근거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4조, 영 제85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8.2.1부터 시행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반영하여 변경</li> <li>○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변경</li> </ul>

〈표 8〉의 계속

	고시명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8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날에 한하여 1일 5,000원 (식대, 교통비 명목)</li> <li>○ 법률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1조, 시행령 제64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유지하되, 단서에서 중복수혜자는 제외</li> <li>※ 직업능력개발법상 위탁훈련을 받는 자 등은 같은 명목의 수당을 받고 있음</li> <li>○ 법률근거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5조, 영 제88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을 받는 자는 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중복수혜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고시 단서에 중복수혜 방지 근거를 마련</li> </ul> </li> <li>※ 영 제88조 제2항에서 직업능력개발수당을 고시하도록 규정</li> <li>○ 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변경</li> </ul>
9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구직급여일액 (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li> </ul> </li> <li>○ 근거 법률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규칙 제52조 의3 제1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명칭 변경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li> <li>○ 내용은 변동없음</li> <li>○ 근거 법률조항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2항, 규칙 제92조 제4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고시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범위) 고시금액 이하로 해석되어 의미가 왜곡</li> <li>○ 법·영·규칙의 개정에 맞춰 조항 및 일부 문장을 합리적으로 수정</li> </ul>
10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2주간, 직업능력개발을 거부하는 경우 4주간 정지</li> <li>○ 근거 법률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6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단서조항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정지된 급여는 해지</li> </ul> </li> <li>○ 근거 법률조항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2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지급 정지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응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격자 급여가 정지된 이후라도 소정의 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li> </ul> </li> <li>○ 법·영의 개정에 맞춰 조항 및 문장을 합리적으로 수정</li> </ul>

〈표 8〉의 계속

	고시명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1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 훈련연장급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에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	○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과정, 다만 40세 미만의 경우 5개 직종(서비스, 사무관리, 금융·보험, 의료, 환경)을 훈련대상에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기능사양성 훈련 ○ 근거법률 : 법 제42조 규칙 제54조	○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과정 - 단서 5개 직종 제한 규정을 삭제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공공직능훈련시설의 기능사 양성훈련 ○ 근거법률수정 : 법 제51조 규칙 제94조	○ 훈련연장급여는 연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시하는 제도이나, - 40세 미만에 대하여 비교적 취업이 잘되는 5개 직종의 훈련을 제한하는 것은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과 같아서 불합리하다고 보아 삭제 ○ 법·영의 개정에 맞춰 조항 및 문장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

〈표 9〉 「예규」 개정내용 및 사유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명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예규)	○ 소정근로시간이 기간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이직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당해기간의 총일수(주휴일 제외)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 법률근거 - 법 제35조	○ 기간단위 소정근로일수 산정은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이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 법률근거 수정 등 - 법 제45조	○ 기간단위에 유급·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일을 공제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변경 ○ 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및 일부 문장을 합리적으로 수정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예규)	○ 제1조(목적) 노동부 고시 제98-56호)에 의하여 - 인정요령을 정하고자 함 ○ 실업급여협의회 주관자를 지방노동관서장과 소속 과장으로 구성하도록 함 ○ 법률근거 - 법 제45조	○ 제1조(목적) 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실업급여협의회 주관자를 센터소장 및 소속 과장이나 팀장으로 구성하도록 함 ○ 법률근거 수정 등 - 법 제58조	○ 수급자격제한사유 인정기준이 고시에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목적의 인용을 변경하고, 문장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 ○ 실업급여협의회 구성자 직책을 낮추어 이를 활성화하도록 함 ○ 법·영 개정에 맞춰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 문장 수정

◆ 민주노총,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000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 민주노총은 2009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결정액과 인상률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 최저선의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인상액임.
  - 이미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시급 4,760원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3,770원에 비해 26.3% 인상한 금액을 요구함.
  -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생계비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총, 중기협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년 최저임금 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3,770원으로 제시함.

◆ 한국노총, 건강보험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

- 한국노총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의료법(2008년 6월 10일) 개정 이유, 즉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 증진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 증진보다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병원 등 의료서비스 공급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대성명을 발표함.
  -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병원의 부대사업 추진, 의료기관의 합병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KLI**